
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‘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’을 폐지하고, 국가가 그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제7항 신설 및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삭제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